

2022년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3. 7.(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11건(안전번호 제2022-8362호~887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8362호(순번 1번)는 ▲▲▲▲▲▲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암호화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링크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8363호(순번 2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0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게시자, 저작자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만 표시하고 비공개 예정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음.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등 2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908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심의 요약표와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모두 검토 보고서 3쪽 이하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암호 형태로 제공 중인 게시물로, 기존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였던 '▲▲▲▲▲▲▲'의 암호화된 링크 건과 동일한 내용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존하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암호 부분을 복사하여 '△△△△△△△△.△△△'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 부분에 새로운 암호가 현출이 되고, 이 암호를 다시 복사하여 입력하면 ◇◇◇◇◇◇◇◇ 주소가 현출됨.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영화 '●●●●●●'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전체 분량을 이용 중인 사실이 확인됨. 게시자는 우측에 삽입된 캐릭터를 통하여 출처가 본인임을 밝히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됨.

저작권법 및 판례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기존 링크 사안과는 달리 암호를 해독하는 추가적인 단계가 요구되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원천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본 사안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바, 링크를 제공 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동일한 형태의 사안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였음. 따

라서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기존에 시정권고 가결하였던 사안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람.
- ○○○ 위원: 현재 우리 심의위원회는 링크 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링크 행위 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권리자가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이용 중인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 정보'로 포섭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 ○○○ 위원: 시정권고의 대상은 '불법복제물등'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에 근거한 해석인지?
- ▼▼▼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나 아직 판례 등 구체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전체위원회에서 정리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 ○○○ 위원: 입법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 있겠음.
- ▼▼▼ 위원: 이러한 방식의 불법복제물 제공 형태는 이전에도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에 대하여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이용자가 영화 '◆◆◆ ◆◆: ◆◆ ◆◆(◆◆◆◆)'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OTT 등을 통하여 합법 시장에서 이용 가능함.
- ▽▽▽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고 있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 ○○○, □□□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에 대하여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다음 안건은 순번 3번부터 511번까지 총 906건으로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물 유형별로 대표 안건을 하나씩 보고 드리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2번은 웹하드에서

음악저작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올해 2. 26.자 음원순위 차트의 100곡을 판매 중인 사안임. 2.8기가의 분량을 150포인트에 판매 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3번은 웹하드에서 2022. 1. 개봉한 국내 영화를 판매 중인 사안임. 2.7기가 분량의 전체 분량을 140 포인트에 판매 중임. 해당 영화는 IPTV나 OTT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1번은 웹하드에서 판매 중인 미국 방송물 '슈츠'로, 시즌2 1화부터 16화까지 전편을 제공 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11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일본 만화 출판물 '새벽의 연화'로 2022년에 출간된 신간 중 217화를 50포인트에 판매 중임. 소위 '해적판'으로 불리는 불법 번역본인 것으로 보임. 이상 4건을 포함하여 총 906건 모두 시정권고의 가결 의결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고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의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51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8362호~8872호(순번 1번~511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1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